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98회임시회(2015. 9.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인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년 8월 21일 (금)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15년 8월 25일 (화)

4. 관련근거

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5. 개정이유

우리구 홍대주변 주차 수요급증에 따른 교통 혼잡 방지와 대중교통을 유도하고 주변 민영 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을 고려, 이용요금 조정을 위한 급지 조정과 법적 위임 없는 과도한 규제정비 및 전통시장 주차요금 할인 조건을 구체화하여 요금 관련 민원 불편사항을 방지하고,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6. 주요 개정내용

- 가. 홍대주변 주차장 6개소 급지 조정 (별지 1호 : 2급지 → 1급지)
- 나.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조항(제2조의2) 삭제
- 다. [별표1] 주차요금표 중 노상주차장 1일주차권(야간에 한함) 삭제
- 라. 전통시장 이용자 주차요금 할인 규정 명확화
-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7.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관광명소인 홍대지역의 내·외국인 방문객의 꾸준한 유입으로 인한, 홍대주변 주차 수요급증에 따른 극심한 교통 혼잡 방지와 대중교통을 유도하고 주변 민영 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을 고려, 이용요금 조정을 위한 급지 조정과 법적 위임 없는 과도한 규제정비 및 전통시장 주차요금 할인 조건을 구체화하여 요금 관련 민원 불편 사항을 방지하고,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제①항의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가의 1급지 구역 변경 (6개소: 2급지 → 1급지) 및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노상주차장 1일 주차권(야간에 한함)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의 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규정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차지법규 정비’와 관련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정비 추진 계획에 의거 삭제 하였으며,

[별표 1]의 비고란 제15호의 전통시장 이용자 주차요금 할인 조건을 당일에 한하도록 주차요금 할인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방지하였으며
(주차확인증 제출 시 → 주차 당일 확인증 제출 시)

기타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조례개정 후 급지조정(2급지→1급지)으로 인한 주차장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및 근거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전문개정 2010.3.22.]

■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